

업 무 협 력 협 약 서

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(이하 “서울디자인재단” 이라한다)와 삼성전자 주식회사(주관 : SADI, 이하 “삼성전자” 라 한다)는 “지속 가능한 서울 발전에 필요한 업사이클링 문화와 산업의 발전”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- 다 음 -

제 1 조 (목적)

본 업무협약은 상호 기관 간의 전략적인 업무제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서울 발전에 필요한 업사이클링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의 기본원칙)

1. “서울디자인재단” 과 “삼성전자” 는 협력과정에서 상대방의 편익과 이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, 필요한 마케팅, 지원, 정보제공에 최대한 노력한다.
2. “서울디자인재단” 과 “삼성전자” 는 본 협약서에서 명시한 협력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 및 기타 관련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여타의 사업자에 우선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조 (협력내용 등)

양 기관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한다.

1. 협력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이다.
2. “서울디자인재단” 과 “삼성전자” 는 서울시 업사이클링 문화 산업발전에 상호 협력한다.
3. 협력기간 내 진행하는 “SADI-LCC 글로벌 서비스디자인 워크숍” 외 타 학과에서 진행하는 작품 전시 등을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 및 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제 4 조 (역할분담 및 권한)

본 협약서에 따른 협력을 진행함에 있어서 “서울디자인재단” 과 “삼성전자” 가 각각 수행하는 주된 역할 및 권한은 아래와 같으며, 이를 위해 각 당사자의 자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한다.

1. “서울디자인재단” 의 역할 및 권한
“서울디자인재단” 은 협력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 제공, 행정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진행한다.
2. “삼성전자” 의 역할 및 권한
“삼성전자” 는 협력업무에 대하여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, 업무수행

에 있어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공동으로 가진다.

3. 기타 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할 분담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.

제 5 조 (협의 및 비밀의 준수)

1. “서울디자인재단” 과 “삼성전자” 는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유출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.
2. “서울디자인재단” 과 “삼성전자” 중 어느 일반 당사자가 전 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직·간접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3. 본 협약서의 내용 및 향후 진행사항을 언론매체에 공개 할 경우 반드시 상호 합의 하에 일정, 보도내용, 매체를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지적재산권 등)

1.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항목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양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.
2. “서울디자인재단” 과 “삼성전자” 에서 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결과물에 기여한 부분을 명시 해야하며, 이때 해당 결과물 전부에 ‘Designed by SADI & Supported by SDF’ 를 명시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해석 및 관할의 합의)

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하되,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 8 조 (신의 성실)

1. 본 협약서와 그 내용을 합의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“서울디자인재단” , “삼성전자” 중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.
2. 본 협력과 관련한 모든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의 사전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.

제 9 조 (효력)

본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본 협약서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는 계속하여 그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10 조 (기타)

“서울디자인재단” 과 “삼성전자” 는 본 사업 협약서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의 기타 사업분야에서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교환 및 업무 개발을 도모하기로 상호 합의한다.

제 11 조 (보관)

본 업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상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5월 일



(재) 서울디자인재단

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
서울시 종로구 율곡로
283(종로6가)

대표이사 **이 근** (서명)



삼 성 전 자

삼성전자 주식회사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
129(매탄동)

대표이사 **권 오 현** (서명)